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33388 손해행위취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변환철
변 론 종 결 2020. 11. 20.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은행 계좌 'C'에 관하여,

가. 2014. 6. 26.부터 2019. 5. 30.까지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
주 명의신탁 계약을 금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91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5. '주식회사 D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89,435원 및 그 중 91,245,165원에 대하여 2006. 3. 13.부터 2006. 4. 29.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은 F 주식회사의 중도매인으로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 명의로 B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D의 직원 명함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F 명의의 계좌로 일정금액이 계속적으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G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자신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는 주식회사 D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2014. 6. 26.부터 2019. 5. 30.까지 2억 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청구권이 예금주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금주에게 계좌의 예금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

판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별지1.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이 실제로 주식회사 D이 지급받을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한편,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된 후 계좌이체, 인출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잔고가 0원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중 피고와는 거래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D과만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별지2.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돈 보다 더 많은 돈이 송금되었는바, 이는 주식회사 D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

결되어 주식회사 D이 자신의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고가 구하는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 별지1. 기재와 같은 돈이 이미 주식회사 D에 복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

별지1.

물품대금 입금내역

순번	날짜	금액	거래내용	입출금명
1	2015-08-28	2,000,000	물품대금	H
2	2015-09-14	3,500,000	물품대금	I
3	2015-10-13	540,000	물품대금	H
4	2015-10-14	950,000	물품대금	J
5	2015-10-15	1,000,000	물품대금	J
6	2015-10-16	300,000	물품대금	H
7	2015-10-17	780,000	물품대금	H
8	2015-10-20	800,000	물품대금	H
9	2015-10-28	600,000	물품대금	H
10	2015-10-30	1,500,000	물품대금	H
11	2015-11-02	800,000	물품대금	H
12	2015-11-04	300,000	물품대금	H
13	2015-11-07	3,000,000	물품대금	I
14	2015-11-11	900,000	물품대금	H
15	2015-11-12	2,000,000	물품대금	H
16	2015-11-13	3,000,000	물품대금	H
17	2015-11-13	600,000	물품대금	H
18	2015-11-18	1,600,000	물품대금	H
19	2015-11-21	1,000,000	물품대금	H
20	2015-11-23	290,000	물품대금	H
21	2015-11-24	680,000	물품대금	H
22	2015-11-25	1,100,000	물품대금	H
23	2015-11-25	800,000	물품대금	H
24	2015-11-26	900,000	물품대금	H
25	2015-11-28	1,100,000	물품대금	H
26	2015-12-01	860,000	물품대금	H
27	2015-12-03	810,000	물품대금	H
28	2015-12-04	2,100,000	물품대금	H
29	2015-12-07	1,900,000	물품대금	H
30	2015-12-08	1,300,000	물품대금	H
31	2015-12-09	3,000,000	물품대금	I
32	2015-12-14	2,700,000	물품대금	H
33	2015-12-16	1,700,000	물품대금	H
34	2015-12-18	900,000	물품대금	H
35	2015-12-18	900,000	물품대금	H
36	2015-12-21	2,600,000	물품대금	H
37	2015-12-23	2,200,000	물품대금	H
38	2015-12-25	6,000,000	물품대금	I
39	2015-12-25	6,000,000	물품대금	I
40	2015-12-25	2,400,000	물품대금	H

순번	날짜	금액	거래내용	입출금명
41	2015-12-27	6,000,000	물품대금	I
42	2015-12-27	6,000,000	물품대금	I
43	2015-12-27	6,000,000	물품대금	I
44	2015-12-27	6,000,000	물품대금	I
45	2015-12-30	3,000,000	물품대금	H
46	2015-12-30	6,000,000	대금결제	I
47	2015-12-30	6,000,000	대금결제	I
48	2015-12-30	6,000,000	대금결제	I
49	2015-12-30	6,000,000	대금결제	I
50	2015-12-30	6,000,000	대금결제	I
51	2016-01-05	5,000,000	물품대금	H
52	2016-01-06	4,000,000	물품대금	I
53	2016-01-06	1,700,000	물품대금	H
54	2016-01-07	1,000,000	물품대금	H
55	2016-01-08	1,000,000	물품대금	H
56	2016-01-12	1,300,000	물품대금	H
57	2016-01-14	600,000	물품대금	H
58	2016-01-16	900,000	물품대금	H
59	2016-01-19	800,000	물품대금	H
60	2016-01-23	600,000	물품대금	H
61	2016-01-25	700,000	물품대금	H
62	2016-01-26	700,000	물품대금	H
63	2016-01-27	700,000	물품대금	H
64	2016-01-30	1,700,000	물품대금	H
65	2016-02-04	500,000	물품대금	H
66	2016-02-05	1,000,000	물품대금	H
67	2016-02-11	4,300,000	물품대금	H
68	2016-02-12	400,000	물품대금	H
69	2016-02-16	500,000	물품대금	H
70	2016-02-17	3,500,000	물품대금	H
71	2016-02-22	700,000	물품대금	H
72	2016-02-23	2,000,000	물품대금	H
73	2016-02-25	900,000	물품대금	H
74	2016-02-26	800,000	물품대금	H
75	2016-02-29	850,000	물품대금	H
76	2016-03-01	900,000	물품대금	H
77	2016-03-02	590,000	물품대금	H
78	2016-03-03	1,000,000	물품대금	H
79	2016-03-05	600,000	물품대금	H
80	2016-03-08	2,700,000	물품대금	H
81	2016-03-09	1,600,000	물품대금	H
82	2016-03-09	600,000	물품대금	H
83	2016-03-10	800,000	물품대금	H
84	2016-03-11	700,000	물품대금	H
85	2016-03-14	2,300,000	물품대금	H

순번	날짜	금액	거래내용	입출금명
86	2016-03-15	400,000	물품대금	H
87	2016-03-16	990,000	물품대금	H
88	2016-03-18	1,600,000	물품대금	H
89	2016-03-21	2,300,000	물품대금	H
90	2016-03-22	900,000	물품대금	H
91	2016-03-23	600,000	물품대금	H
92	2016-03-24	500,000	물품대금	H
93	2016-03-31	1,200,000	물품대금	H
94	2016-04-05	1,400,000	물품대금	H
95	2016-04-07	2,800,000	물품대금	H
96	2016-04-09	500,000	물품대금	H
97	2016-04-11	900,000	물품대금	H
98	2016-04-20	1,100,000	물품대금	H
99	2016-04-25	770,000	물품대금	H
100	2016-04-29	900,000	물품대금	H
101	2016-05-02	1,700,000	물품대금	H
102	2016-05-03	1,200,000	물품대금	H
103	2016-05-10	950,000	물품대금	H
104	2016-05-11	500,000	물품대금	H
105	2016-05-12	580,000	물품대금	H
106	2016-05-16	1,400,000	물품대금	H
107	2016-05-24	600,000	물품대금	H
108	2016-05-27	500,000	물품대금	H
109	2016-05-31	300,000	물품대금	H
110	2016-06-03	640,000	물품대금	H
111	2016-06-06	900,000	물품대금	H
112	2016-06-10	660,000	물품대금	K(L
113	2016-06-10	400,000	물품대금	K(L
114	2016-06-10	430,000	물품대금	K(L
115	2016-06-10	360,000	물품대금	K(L
116	2016-06-13	390,000	물품대금	K(L
117	2016-06-14	600,000	물품대금	K(L
118	2016-06-14	680,000	물품대금	K(L
	합 계	200,000,000		

별지2.

입출금명 F로 계좌이체된 내역

날짜	금액(단위 : 만 원)
2015. 9. 14.	300
2015. 9. 15.	250
2015. 9. 16.	300
2015. 9. 17.	280
2015. 9. 18.	300
2015. 9. 19.	300
2015. 9. 21.	250
2015. 9. 22.	400
2015. 9. 23.	350
2015. 9. 24.	260
2015. 9. 25.	300
2015. 9. 26.	320
2015. 9. 30.	200
2015. 10. 1.	110
2015. 10. 2.	200
2015. 10. 3.	210
2015. 10. 5.	220
2015. 10. 6.	260
2015. 10. 7.	200
2015. 10. 10.	300
2015. 10. 12.	200
2015. 10. 14.	210
2016. 10. 16.	270
2015. 10. 17.	300
2015. 10. 20.	260
2015. 10. 21.	220
2015. 10. 23.	200
2015. 10. 26.	220
2015. 10. 27.	200
2015. 10. 28.	180
2015. 10. 29.	200
2015. 10. 30.	200
2015. 10. 31.	400
2015. 11. 2.	200
2015. 11. 3.	240
2015. 11. 4.	400

2015. 11. 5.	200
2015. 11. 6.	155
2015. 11. 7.	500
2015. 11. 9.	230
2015. 11. 10.	230
2015. 11. 11.	300
2015. 11. 12.	300
2015. 11. 13.	400
2015. 11. 14.	300
2015. 11. 16.	200
2015. 11. 17.	200
2015. 11. 18.	300
2015. 11. 19.	150
2015. 11. 20.	300
2015. 11. 21.	300
2015. 11. 23.	260
2015. 11. 24.	300
2015. 11. 25.	300
2015. 11. 25.	300
2015. 11. 26.	160
2015. 11. 26.	50
2015. 11. 27.	300
2015. 11. 28.	300
2015. 11. 30.	335
2015. 12. 1.	260
2015. 12. 3.	360
2015. 12. 4.	340
2015. 12. 5.	400
2015. 12. 9.	400
2015. 12. 10.	400
2015. 12. 11.	360
2015. 12. 14.	560
2015. 12. 15.	400
2015. 12. 16.	500
2015. 12. 17.	500
합계	20,060